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2654호
----------	--------

2021. 10. 14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09. 27. 양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1. 09. 28. 행정재경위원회
- 다. 상정일자 : 제2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
2021. 10. 14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행정지원국장)

- 가. 제안이유
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산을 위해
건립된 갈산문화예술센터 개관에 따라 센터의 관리·운영 등에 필요한
사항을 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설립 근거와 위치, 운영시설을 정함.
(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)
-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,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.
(안 제6조, 제10조)

- 갈산문화예술센터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, 요금의 감면 등에 대한
기준을 정함.(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)
-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가. 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신정7동에서 개관 예정인 갈산문화예술센터의
관리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,
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을 목적으로 함.

나. 검토 내용

- 조례안의 체계
 1.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설립 근거와 위치, 운영
시설, 사용시간 등을 규정함.
 2. 안 제6조와 제10조에서는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 등에
관한 사항을 규정함.
 3.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갈산문화예술센터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,
요금의 감면, 사용자의 부대설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.
 4. 안 제11조에서는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
확산을 위해 건립된 갈산문화예술센터 개관에 따라 센터의 관리·운
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안임.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·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양천구민이 보다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존의 양천 문화회관과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6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